

『2024년 부천창업리그』 참가기업 모집 공고

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(기업)를 대상으로 경연을 통해 창업능력 향상 및 창업생태계를 확산하고자 『2024년 부천창업리그』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6월 19일
부천산업진흥원 원장

1 모집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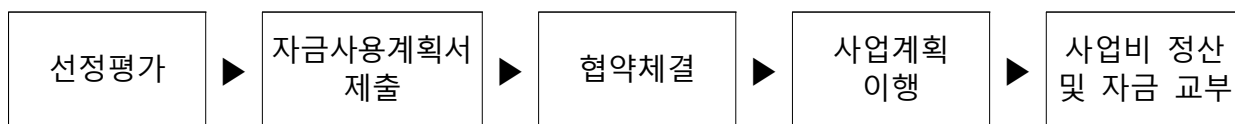
- 모집기간 : 공고일 ~ 7. 12.(금) 16:00 까지
- 모집대상 :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스타트업

구분	내용
신청자격	• 공고일 기준,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※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
신청가능 업력	• 사업개시일 <u>2021년 6월 18일부터</u> 신청 가능
유의사항	•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부천시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연구소 등) 이전

※ 세부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은 '3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' 참조

- 선정규모 : **총 8개사 이내**

<사업 진행 절차>



2

지원내용

구분	사업화 자금 지원	엑셀러레이팅(멘토링)
기간	2024. 8월 ~ 12월	
대상	유망창업기업 8개사 이내	
내용	시제품 제작, 지적권 획득, 외주용역 등	희망멘토/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멘토 매칭 후 기업별 애로해결

1 사업화 자금 지원

- 신청한 과제와 관련된 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획득,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

구분	합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
입상자수	8	1	2	5
사업화지원금	2억원	4,000만원	각 3,000만원	각 2,000만원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

【유의사항】

- 사업화 자금은 협약된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사업화 소요비용을 기업에서 선집행 후,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·오집행 금액, 미사용 금액 등을 제외하고 교부
- 관외 기업은 협약 기간 내 사업장(본점, 지점, 연구소 등) 부천 이전 필수
- 회계 감사 정산 시,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
- 회계감사 비용은 선정된 기업에서 사업화 자금을 편성

-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함

※ 인건비,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계장치,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, 지급수수료, 광고선전비. 단, 인건비는 사업화 자금의 30%이내에서 지원

2 엑셀러레이팅(멘토링) 지원

- 기업경영, 인사, 마케팅, 시장, 비즈니스모델(BM), 회계, 법률, 투자/IR 등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1:1 멘토링 추진
- 기업 당 3회 내외로 진행하며, 기업 수요 조사 후 매칭

3 인센티브 부여

- 1 경기도 주관 경기창업공모전(2025) 1차 예선 면제(참가자격 해당 시)
- 2 부천벤처펀드 등 투자기관(VC, AC, 엔젤 등)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
- 3 그라운드21 등 창업시설 입주 시 우대(서류평가 면제)
- 4 정부·지자체 등 창업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지원
- 5 기타 진흥원 자체 사업 등에 기업 추천

3

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• 공고일 기준,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※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
신청가능 업력	• 사업개시일 2021년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
유의사항	•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이내 부천시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연구소 등) 이전
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의 개시일 적용

구 분	내 용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상의 '개업연월일' 기준
법인사업자	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다수사업자	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 등으로 창업기업 여부 확인
공동·각자대표	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모두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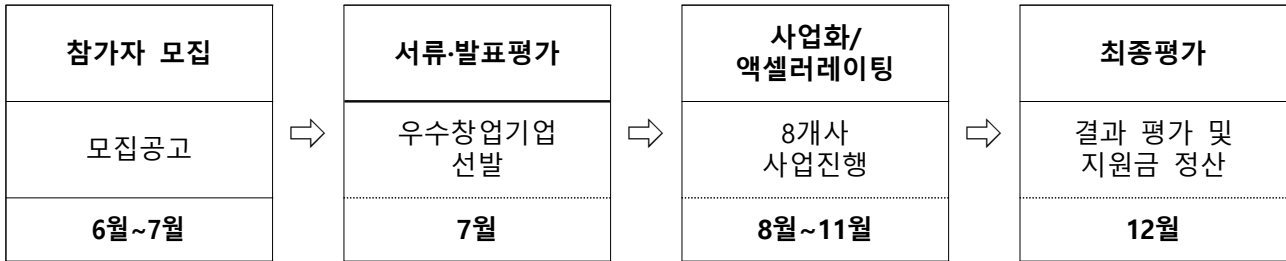
□ 제외대상

- 부천창업리그에 입상하여 시상금 또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창업공모(경진)대회를 통해 3천만원 이상의 지원(상금)을 받은 기업
-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, 환경오염 등 경제질서 및 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창업아이템
- 단순 유통, 숙박 등의 업종 등 제조·지식기반이 아닌 창업아이템
-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※ 단,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변제 완료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
-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 및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(24. 1. 19.)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
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,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,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,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4

추진일정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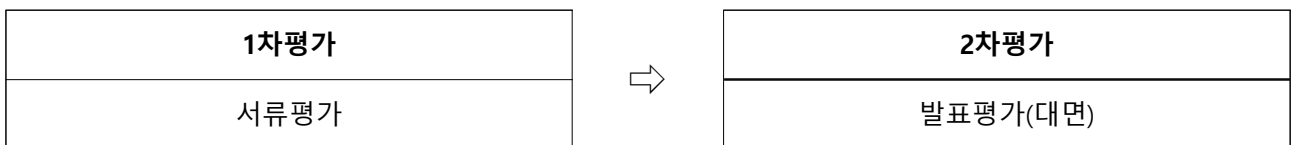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창업 아이템(제품 또는 서비스 등)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평가절차



※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발표자료 준비(PPT 등)
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문제인식(20)	1-1.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	10
	1-2. 창업 아이템 목표시장(고객)설정 및 요구사항 분석	10
실현가능성(30)	2-1.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준비현황	15
	2-2. 창업아이템의 실현(개선/개발) 및 구체화 방안	15
성장전략(40)	3-1.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	10
	3-2. 창업아이템 시장 진입 등 사업화 전략	15
	3-3.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	15
팀 구성(10)	4-1.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	5
	4-2. 중장기적 ESG 경영 도입 계획	5

※ 서류 및 발표평가 공통

5

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4. 7. 12.(금) 16:00까지
- 접수방법 :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·접수
 - 진흥원 홈페이지(www.bizbc.or.kr) - 사업신청 - 사업공고(모집중)에서 신청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 외 방법으로 접수 불가
 - 제출서류는 PDF 1개의 파일(파일명: '부천창업리그_기업명.pdf')로 제출
 - 접수마접수마감 이후 추가 제출 및 수정은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
 - 참가신청 시 제출

구분	증빙서류 제출목록
신청자격 증빙서류	1) (필수) 참가신청서
	2) (필수) 사업계획서
	3) (필수) 사업자 증빙서류 - (개인)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- (법인)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
	4) (필수) 기업 이전 의향서
	5) (필수) 참가서약서, 참가자격여부 약약서, 기업의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홈택스, 정부24)
	6) (해당시)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기타서류	7) (해당시) 투자유치 실적(계약서, 협약서, 입금내역서 등)

- 협약체결 시 제출(별도 안내)

구분	증빙서류 제출목록
협약서류	1) (필수) 창업기업확인서
	2) (필수) 기업 통장 사본(신설 통장)
	3) (필수) 사업비 사용 계획서

【유의사항】

- 자격검토를 위해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(사업자등록증은 제외)
-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 요망
- ※ 서류평가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
6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신청시 주의사항

- 창업기업은 참가신청 이후 공개된 내용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과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- 모든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 발견, 자격 미달 또는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시상금 환수,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부천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, 횡령, 편취 등 부정적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 있고 채권 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□ 문의처 : 부천산업진흥원 창업성장팀 (032-716-6512 / han0616@bizbc.or.kr)

【참고사항】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창업아님 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 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아님
			폐업 3년 까지	창업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아님	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업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 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아님
			폐업 3년 까지	창업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업	

- 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- 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
 - 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 - ②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